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박용상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 행사의 요건과 방식

1. 개관

정정보도청구권제도가 1980년말 「언론기본법」에 도입된 후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수용되어 시행 10년이 지난 오늘 이 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넓어지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도 다수의 사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규칙」(1981. 4. 1.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재 81-1 호, 1988. 8. 29. 개정)을, 법원에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규칙 제 1003 호)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서에 의한 집행 절차를 규제 하기 위해 「언론중재 화해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규칙」(1988. 9. 23. 대법원규칙 제 1027 호)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다수의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무상의 처리요령과 기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권리의 성립요건과 예외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법에 의해 부여된 구제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를 안내해 줄 이렇다 할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구체적 처리 절차에 관하여도 몇 개의 법조문 이외에는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여러 문제에 해답을 주는 명백한 처리기준도 있었다.

이 논문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그 처리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해설을 시도하면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는 타당한 해결점을 모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관례와 우리 법원의 실무관행을 살펴보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에 관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는 최근에 괄목할 진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및 학설을 참고로 하여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려 하였다.

2. 행사기간

현행 정기간행물법은 법적인 구제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중재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

우선 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문제된 보도가 행해진 후 신문, 통신, 방송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이다(법 제 16 조 1 항).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것은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이다(법 제 16 조 1 항).

그러나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의 기간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 개월이기 때문에(법 제 18 조 1 항) 신문 방송 통신에 있어서는 이의대상인 보도가 있는 후 14 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 월 이내이면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 10 조 1 항).

신문 통신 방송 이외의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대한 언론사에의 직접청구는 공표후 1 월 이내의 제척기간 내에 하면 되고, 이를 거친 후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그 직접 청구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라면 설사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 월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중재신청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피해자의 보호에는 미흡하지만, 언론사를 정정보도청구의 우려로부터 조속히 해방시켜 법률관계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의미가 있다.1)

3. 행사의 상대방

1) 상대방의 표시

정간물법은 독일법의 전통을 따라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 그 행사의 상대방을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한다(법 제 16 조 1 항). 여기서 발행인(Verleger)이란 언론법에 특유한 개념인데, 자기 스스로 제작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작케 한 인쇄물을 퍼내어 반포하는 자를 말한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한다. 독일법상의 편집인(verant-wortliche Redakteur)이란 발행인에 의해 임명되는 자로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가벌적 내용에 대한 언론법상의 형사책임을 지는 자이며, 정기간행물의 내용 중 가벌적 내용을 배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우리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에 대응하는 정정보도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법적인 주체는 실제함으로 보아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업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와 같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단계에서는 언론기업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의 기재례를 보면 「상대방(또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월간조선 발행인)」라고 표시하고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있다.

2) 언론사에 대한 청구와 중재신청간의 관계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든 이를 생략하고 바로 중재신청(연계법 제 50 조 4 항, 정간물법 제 18 조 1 항)을 하든 무관하고 2),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에

있어서 언론사에 대한 직접청구(언기법 제 49 조 1 항, 정간물법 제 16 조 1 항)는 법원에 제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다.

4. 행사방식

1) 사용언어

정정보도문이 국내에서 공표되어야 할 경우 그것이 국어로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원보도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그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함이 독일의 지배적 이론이다.

2) 정정보도청구서

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정간물법 제 16 조 1 항),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 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 16 조 2 항).

서면에 의해야 할 뿐 특별한 형식은 필요치 않다. 그 구체적인 서식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재신청서 나 정정보도청구심판의 신청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즉, 게재보도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정정보도문의 게재보도를 청구하는 이유를 조리있게 설명 기재하고 정정보도문을 첨부하면 된다.

일반적인 서면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와 같이 정정보도청구서에도 본인의 주소기재와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주소의 기재는 본인의 최소한의 신원과 연락처를 표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화번호 등 연락가능한 방법을 함께 표시함이 바람직하다.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의사에 기한 여부를 확인케 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인의 경우에 법적인 대표권을 갖는 기관의 자격과 그 구성원 개인의 서명날인이 요구됨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도 가능하다. 대리에 의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명시하고 대리권의 수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정정보도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행해진 본인의 서명날인의 진정성 여부에 다중이 있는 때에는 공증을 받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정보도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서면에 의하게 한 원래의 취지는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문안을 확정된 형태로 제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게재를 바라는 정정보도문의 말미에는 청구인의 성명이나 법인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본인의 서명날인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서명날인은 정정보도청구서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본인의 이름이 나 법 인명은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그대로 표시해야 하는 정정보도문의 일부이다. 그러나 원문보도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어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피해자의 기명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명을 생략할 것을 바랄 수 있고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성명을 기명함으로써 족하다.4)

정정보도문을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로 정정보도청구권이 라는 권리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작성요령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II. 정정보도문에 관한 요건

1. 정정보도문의 크기 및 범위

1) 법 조문

정정보도청구권은 양적으로도 제한된다. 독일제주의 언론법은 반론문이 그 분량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면 언론사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인 원문의 분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우리의 정간물법은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동법 제 16 조 5 항). 이것은 독일 제주의언론법이 규정한 바를 본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직된 감이 없지 아니하여 독일에서의 해석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학설

지배적인 견해는 원문보도의 기사 전체가 아니라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의 분량만이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5) 그러나 반대설은 사실보도 부분과 의견표현부분을 포함하여 이의대상인 기사 전부가 여기서 요구되는 분량제한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론을 함에는 원보도와와의 연관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보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복하여야 하며, 특히 단순히 이를 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실관계를 보충 또는 설명 하려 면 정정보도문의 분량은 필연적으로 원보도보다 더 커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애초부터 이의대상인 원문의 분량보다 반론문의 분량이 더 커질 수 있는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수에 따른 수적인 기준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수적인 기준이 아니라 쟁점별로 또는 주장된 사실별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알릴 만한 반대사실의 언급이 필요치 않다면 한 줄만으로도 족할 수 있지만, 반대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에 몇 배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게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판단기준

이러한 근거에서 최근의 유력설은 피해자가 원보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관계되는 모든 점 에 관하여 언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 에서 출발하고 있다.6) 그러므로 피해자는 독자에게 자기의 응축된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음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7)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심사에 있어서는 세세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황하게 길게 작성된 정정보도문은 거부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자기작성의 반론문에 관하여 의미 있는 근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부적법하게 친황하다는 비판은 정당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 정정보도문이 특정의 쟁점에 관하여 다른 스타일로 작성되는 경우에 보다 간략한 표현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적 민 기준은 상대적 민 의 미만을 갖는 것이다. 물론 4 줄로 보도된 것을 4 면으로 반론을 청구하는 것은 당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정정보도문이 원보도를 한번 인용 설명하고 또 다시 그 원보도를 부정하는 식으로 2 차례에 걸쳐 언급하는 정정보도문을 받아 들이도록 허용한 바 있다.8) 청구인이 총체적인 점에 대하여 반대사실의 주장으로 대응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단지 요약을 위해 하나의 사항으로 총괄하려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표현양식의 여하가 거부의 이유로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정보도문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반대사실과 허용될 수 있는 보충적인 진술 및 간결한 증거적 사실의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정보도문의 분량 자체가 비례적인 척도의 기준에 구속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정보도문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내용적 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제목

정정보도문에 제목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법문상으로는 명문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피해자에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원보도가 제목에 의해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제목을 붙여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무기대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언제나 허용되며, 「어떠어떠한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도 허용될 수 있다. 원문보도의 제목에 이의대상인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내용의 제목을 정정보도문에 첨가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정상적인 편집부문의 기사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이 단순히 「정정보도문」이라고만 되어 있는 경우 언론사가 임의로 수정이나 첨가를 할 수는 없다. 청구란이 정정보도문에 제목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이라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되는 내용의 제목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중립적인 입장의 것이어야 하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원보도의 제목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정정보도문의 의미를 감쇄시키거나 그에 반하는 경우 적절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주석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9)

이러한 위반이 있으면 정정보도문을 게재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적합한 내용으로 재차 게재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정정보도문의 내용

1) 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도를 바라는 반론 즉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 권리의 실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정간물법은 언론기본법 이래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사실보도에 국한하고 있는 필연적인 귀결로서 반론의 내용도 사실주장만이 허용되고, 이의있는 보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범위내에는 그에 대한 반박이나 필요한 보충적 진술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 16 조 4 항). 그리고 이 진술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고(법 제 16 조 4 항 후단), 명백히 오류이거나 혼란시키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정정보도문의 일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체가 거부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건과 관련한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원문보도와 관련성 표시

정정보도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먼저 유의할 것은 그것이 어떠한 원문보도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관련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 관련성의 표시는 필요할 뿐 아니라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¹⁰⁾

원문보도가 실린 판에 날짜 및 그 면의 수와 제목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일 것이다. 제목과 상세한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요약이나 개괄로써 족하다. 원보도가 게재된 인쇄물을 찾아볼 필요없이 원보도의 내용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취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 반박 또는 보충함에 필요한 한도에서 원보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원보도의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원문보도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사항만을 이의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반론문에서도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관련성의 표시가 원문보도의 뜻을 왜곡시키거나 혼란에 빠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독자로 하여금 틀린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문보도가 인용보도되었음에도 정정보도문에는 언론사의 주장으로 적시되어서는 아니되고, 원문보도가 행해진 원래의 사실관계나 연관관계 이적의 관계로 적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요건은 독일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¹¹⁾

정정보도문의 주된 내용은 위와 같이 요약된 원문보도가 거짓이라거나(falsch) 틀린다거나(unrichtig) 또는 사실이 아니라(unwahr)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 가치 평가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어떠 어떠한 (원문)보도에 반하여 이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 기재하거나, 「몇일자 신문에 어떠한 어떠한 보도가 있었으나 그에 대하여는 이러 이러한 반박을 할 수 있다」 고 기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3) 구체적 내용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와 다른 내용을 독자에게 알게 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이의의 대상인 원문보도의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gedankliche Zusammenhang)을 가져야 하며, 그에 지시될 수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정정보도문은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법문상 명시되고 있지 않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며, 언론사측으로부터 보면 선행보도에 대령되는 입장을 나타내는 타인의 원고를 게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엄격히 요구되는 요건이다.¹²⁾ 따라서 정보가치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평행적인 내용의 논쟁을 시도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반박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기하는 것이 반론권의 원래적 목적임은 물론이다. 단순한 부정에 그치는 정정보도문도 허용되며, 반드시 원문보도와 구별되게 하거나 해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부민만으로는 청구인이 원문보도의 어떠한 점에 대하여 반박하려는 것인가에 관하여 명백치 못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A는 저술가 W의 가까운 협력자이다」라는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위 보도는 틀렸다」라는 단순한 부정만을 내용으로 한다면, A는 W의 협력자가 아니란 의미인지 또는 협력자이긴 하되 가깝지 않다는 의미인지 불명하여 혼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부정된 사실관계가 다른 특정 내용으로 대치되는 경우에만 반론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정정보도청구권의 본래적인 목적은 피해자가 처음의 보도에서 주장된 바에 대립하는 사실관계를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해명 내지 보충적인 설명도 허용된다(법-제 16 조 4 항 참조).¹⁴⁾ 독일의 판례는 예컨대 피해자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의 관계가 보도된 경우와 같이 복잡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에 의해 피해자의 입장표명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원칙상 원보도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임을 요한다. 사후의 경과사실은 증빙사실로서나 적시될 수 있을 뿐이다.

원보도가 인용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 해당초 제 3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거나, ㉡ 아니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고, ㉢ 그 인용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뷰에 응한 자의 주장에 대하여도 반론권이 행사될 수 있다.

정정보도의 내용으로 신문에 인용된 주장 내용의 의미 여하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의견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못한다. 언론이 제 3자의 말을 올바르게 보도하였다면, 그 제 3자는 종전 자기의 말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과거의 입장을 시정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틀린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수만을 제공할 뿐이지 개인 자신의 오류 시정을 위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그 인용된 주장이 내용적으로 잘못 인식되도록 주석을 붙인 경우에는 그 주석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보충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한 정치인이 말한 진술을 인용보도한데 대하여 그것이 진정한 소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진정성 여부에 대해 이의할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원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과 양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완전성 때문에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사실의 설명이 허용된다. 학설 15)과 판례에 의해 보충적 반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에 살펴본다.

㉠ A, B, C가 함께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였는데 신문이 「A와 B가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면 C는 당해 신문사에 대하여 그도 함께 등정하는 데 동참하였다고 보도하여 달라는 보충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같은 이치에서 제 2심에서 무죄확정된 사실을 언급함이 없이 특정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자는 제 2심에서 무죄확정되었음을 보도하여야 한다고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 「X가 Y에게 총격으로 중상을 입혔다」는 보도에 대하여 Y는 「X가 총격 직전에 도끼를 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총을 쏘았다」는 내용의 반론이 허용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독일의 판례는 「일정 조사연구팀의 리더는 K 교수이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그러나 그 작업에는 윈스터대학의 마르크스주의 언론학 모임의 회원이 주로 관여하였다」는 보충적 반론권을 허용하였다.16).

㉤ 「한 지원단체가 TV 제작팀을 위해 우간다행 비행기표를 왔다」는 보도에 대해 「방송공사가 그 비행비용을 모두 지불하였다」고 보충하는 반론권이 인용되었다.

㉥ 「청구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관청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전과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보충이 허용될 수 있다.

그 불완전성이 기자의 임무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 의문의 해소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명확성을 제거해 달라는 가능성까지 갖는다(Beseitigung von Unklarheiten). 이 가능성은 특히 전후 모순이 있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기사의 한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1,000분의 1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1,000분의 2라고 기재한 경우 피해자는 1,000분의 1이 맞는 것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일반독자가 어떤 수치가 맞는 것임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주장이 1,000분의 1을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반론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증빙사실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정정보도문에는 그 사실주장의 정 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도 있다(증빙사실, Belegtatsachen).¹⁷⁾ 따라서 예컨대 A 잡지가 미리 보도함으로써 경찰의 추적 조치가 좌절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여타 잡지들이 이미 그 해당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A 잡지에 의한 방해는 당치 않다는 반론이 허용된 바 있다.

관련성이 없는 증거의 인용은 혼란을 유발하므로 적절한 자료사실만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 건물이 여러 관점에서 위험투성이라는 보도에 대하여는 그 중 한 측면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안전진단필증만을 내세우는 반론은 허용될 수 없다.

4) 사실적 진술에 국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언론의 사실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전술한 바와 같은 반박, 보충 또는 증빙을 위해 기재되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보도문도 사실적 주장에 국한된다(법 제 16 조 4 항). 이 경우에도 사실주장인가 의견표현민가의 구별기준은 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논해지는 바와 같으나, 그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이 독일의 실무례이다.

다만 청구인은 그에 의해 주장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한에서만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그는 원보도에 대하여 언제나 이론적으로는 예외없이 그와 다른 기본적 또는 세부적 사실 관계를 대조시킬 수 있고, 다른 사실주장을 기술할 수 있다.

아무런 사실적 기술 없이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판단만을 내려 예컨대 아무 실속없는 세일행사였다고 비판하는 보도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가치판단은 사실관계와의 연관이 있게 마련이므로 청구인은 그 사실관계에 대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복잡한 연관관계를 해명함에는 너무 큰 스페이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 진술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반대결론으로 대치시키거나 외관상 가치평가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정정보도청구를 가능한 것으로 취급해야 할 경우도 있다.¹⁸⁾

원보도가 결론 이외에 그에 근거되는 사실관계나 또는 구체적인 예까지 언급한 때에는 물론 반대결론과 함께 구체적 사실로써도 반론될 수 있다.

정정보도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무상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정정보도문이 원보도의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평가를 주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원문보도의 내용과 대비하여 그 허용되는 표현강도 여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문보도가 격렬한 비난의 톤으로 작성되었다면 정정보도문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표현강도가 허용되며, 원보도가 절제있는 태도를 취했다면 정정보도문도 주의깊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상형적 반론

언론이 사진이나 그림에 의해 사실주장을 유포하거나 그림과 문안의 결합에 의해 사실주장이 행해지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정정보도(이른바 상형적 반론)는 원칙적으로 문안에 의해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원보도가 사진기록에 관한 것인데, 바로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때와 같이 반론의 이해를 위해 불가결한 경우에는 사진의 게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진의 새로운 게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단지 사진의 게재가 문언에 의한 보도의 주의를 끄는데 불과한 것이었다면 대응사진의 게재를 요구할 수는 없다.

6) 기타 내용상의 제한

① 위법한 내용

정정보도는 위 법 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 16 조 4 항 후단), 위법한 내용이라 함은 형사상 처벌받게 되는 내용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정정보도문은 처벌받게 될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언론사에 대하여 처벌받게 될 내용을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벌가능성 여부는 개개의 형벌면제사유 또는 책임면제사유와는 상관없이 판단된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당화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 가있는 경우에 그 내용은 처벌받지 아니한다.¹⁹⁾

정정보도문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심사될 수 없음은 수차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때문에 정정보도가 제 3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가벌성이 긍정되는 때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의 원칙을 말한다면 제 3자의 동의를 있거나 법적인 부담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정정보도문에 관계없는 제 3자를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제 3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러한 사정의 언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에 관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유를 갖는 여부에 따라 그 가벌성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정당화사유의 인정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명예보호 간의 이익형량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청구인의 그러한 이익형량 의무를 떠맡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된다. 그 형량은 우선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언론사의 판단에 의존하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와 달리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고려할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러므로 그 게재가 명예훼손의 위험부담하에서만 감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이익형량의 부담을 떠맡을 이유는 없고, 따라서 게재 청구는 거부될 수 있다.

정정보도문이 예컨대 제 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민사상 불법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당한 이익을 잃게 된다.

② 광고적 내용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청구는 거부된다(법 제 16 조 3 항 단서). 현행법상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또 편집부문과 광고부문을 엄별하는 언론계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편집 부문의 사실주장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원보도가 영업적인 실적이나 거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었다면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다소간 PR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의 실무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관한 PR기사의 게재가 약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③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

정정보도청구권의 형식적 권리의 성격상 정정 보도청구권의 발생을 위해 원보도의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원칙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신속성 요청을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정정보도문의 진실 여부를 문제 삼는다면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권리의 신속성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은 이를 생략하게 하기 위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따질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정정보도문의 진실성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정정보도청구권으로써 거짓말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때에는 어떠한가. 그러한 내용의 반론을 보도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뿐 아니라 언론사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정간물법 제 16 조 3 항 단서).

명백한 허위의 징표에 관하여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명백성은 예컨대 정정보도문의 주장 내용이 일반적인 경험사실이나 기타 알려진 사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없는 독자가 그 허위임을 즉각 알 수 있다가나 그 허위성을 관심있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법원은 정정보도문에 포함된 주장이 소명자료의 형량과 평가를 거칠 필요도 없이 명백히 허위임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여기서 말하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로서 예시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 261 조 참조). 공지의 사실이란 역사적 사건, 지역간의 거리 또는 현재의 주가수준 등 증거조사를 함을 요하지 않고 바로 그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원이 여러 사건을 담당하면서 지득한 사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당해 사건의 기록에 의해 지득한 사실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이나 종전에 스스로 진술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다른 예외사유의 경우와 같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것도 피청구인인 언론사측에서 정정보도 의무를 면하기 위해 그의 주장입증을 요하는 항변사항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컨대 청구인과 제 3자 간에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인 언론사 측에서 청구인과 제 3자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을 제출하면서 정정보도청구인의 주장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항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독일에서의 학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문서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해명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만약 그 문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의문의 여지 없이 허위 라는 심증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정정보도청구는 인용되어야 하고, 그 반대로 청구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할 수 없었다면 청구는 기각되게 된다.²¹⁾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불복에 의해 이의나 항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판단 시점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22)

④ 명백히 혼동시키는 내용

정정보도문이 독자를 혼란시키게 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3) 허위가 아니지만 독자로 하여금 진실과는 조화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게 할 진술이 정정보도문에 기재되는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또 단지 보완이나 제한만으로 족한 보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경우에는 혼란의 우려가 있게 된다. 예컨대 청구인이 공갈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는 보도에 대하여 그가 공갈죄는 아니지만 강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지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이다.

청구인은 원보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몇 가지 사항만을 선택함으로써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원보도의 불명료성을 악용함으로써도 혼란을 유발할 수 없다.

그것은 정정보도가 대상으로 하는 점에 관한 일반 독자의 이해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이나 기타 특별한 전문가가 그러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혼란을 줄 의도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문이 혼란을 유발하는가의 여부는 공표당시를 기준으로 그때에 존재했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항소심에서 이미 공표된 정정보도의 당부가 논란되는 경우에는 그 공표당시 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후에 일어난 경과를 고려할 수 없다.

5. 재판

1) 각하결정

부적법한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위 규칙 제 5 조).

2) 인용재판

정간물법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 제 16 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되는 점을 나누어 살펴본다.

① 정정보도문안의 변경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취지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인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거론된다. 독일에서의 다수설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론보도문이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독일법이 반론권의 행사상대방을 편집인 또는 발행인으로 하고 있는 관계상 반론보도문은 편집인이나 발행인에게 제시됨을 요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론보도문안을 법원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발행인이 언론사를 행사의 상대방으로 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협의의무를 인정 하고 있는 점이라거나 신청취지의 변으로서 정정보도문안의 변경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으로서도 원보도에 신청인과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이 긍정되는 한, 신청인이 작성한 정정보도문의 대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제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신청된 정정보도문이 부정화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전술한 요건과 범위내에서 적절히 삭제 또는 수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의 의미나 전체적 취지를 일괄할 수는 없고, 수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주문의 기재요령

법원이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 7 조 1 항). 특히 제목의 내용과 활자 크기도 명시하고 게재부위 및 크기에 관하여는 제 0 면 또는 사회면 좌상단 0 단 크기 등도 명시 하여 신문조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특정되지 아니하면 집행에 즈음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 7 조 2 항).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환언하면 앞서 언론사의 협의절차와 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언급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③ 담보공탁제도의 준용 여부

돈을 공탁하여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한다거나 언론사가 돈을 걸고 정정보도의 게재의무를 정한다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규칙 은 민사소송법상 신청인의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과 피신청인의 가압류해방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위 규칙 제 7 조 3 항, 민사소송법 제 700 조 2 항 내지 4 항, 제 702 조).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패소당사자가 부담하는 일반원칙에 따를 것이지만, 정정보도문이 수정되거나 그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비례적 부담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재판의 효력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그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⑥ 송달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 7 조 4 항). 따라서 통상의 가처분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정정보도심판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판은 피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6. 강제집행

1) 집행의 방법

정정보도청구심판에서 승소한 신청인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재판에 기재된 대로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가 패소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행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 위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명의가 됨은 물론이다.

언론사의 정정보도 이행의무는 당해 언론사가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른바 불대체적인 작위의무를 의미하며, 현행 강제집행제도상 이와 같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한 간접강제만이 가능하다.

2) 집행문의 불요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이나 결정은 여타 보전처분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한다. 그 집행을 위해서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다만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채무명의인 재판서 정본의 송달 이전이라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3) 집행기간

판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 일이 도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 708 조 2 항, 제 715 조). 잠정적인 권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급박성이라든가 발령후 사정 변경의 우려에서 이렇게 집행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도 이 집행기간의 제한을 준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비록 신속성을 요한다 할지라도 승소한 당사자가 원보도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는 한 사정변경이란 생각할 수 없고, 위 재판은 언론에 의해 피해받은 자의 실질상 종국적 인 구제임을 감안한다면 위 집행기간에 관한 규정은 준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항소후의 소송에서 패소 및 비용부담의 의구심을 갖는 당사자가 확정을 기다려 집행하려 하는 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상당하지 않고, 월간 또는 계간 등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14 일 이내에 집행을 하게 한다면 피해자에게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4) 간접강제의 신청

간접강제의 집행기관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민소법 제 693 조 참조). 실무상으로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간접강제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이 항소로 상급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간접강제의 신청은 채무자인 언론사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 693 조). 위 신청에는 위에서 본 정정보도를 명하는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문이 필요없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나 합의 간주된 사항을 기재한 중재조서를 채무명의로 하는 경우에 집행문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심리와 재판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한 규정(민소법 제 694 조)은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 간접강제에 적합한 채무의 내용이 그 이행기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명백히 정해지고 있어 채무자의 심문을 요할 특별한 사상이 없을 뿐 아니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 필요로 하는 신속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 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지급할 것 또는 일시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배상할 것을 명한다(이른바 예고결정, 민소법 제 693 조). 채무자가 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 주문과 동일하게 표시하면 된다.

정정보도재판의 간접강제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란 바로 법문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일간신문과 주 1 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에 있어서는 9 일,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다음 발행호의 발행일까지가 될 것이다.

간접강제결정에 정하는 배상금은 채무자인 언론사가 정정보도의무의 채무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는 상관이 없고,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

위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6) 배상금의 추심

간접강제결정이 있었음에도 채무자인 언론사가 그 결정에 표시된 기간내에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하여 언론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결정에 표시된 배상액을 추심할 수 있다. 이 집행에는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한다.

7. 불복절차

1) 불복방법의 제한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은 그것이 결정인 경우 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판결인 경우에는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

정정보도심판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70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 제 8 조). 따라서 정정보도심판이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 703 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통상의 항소로서 불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밖에 가처분절차에서 허용되는 각종의 가처분취소의 절차(본안제소명령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등)는 이미 내린 임시적 조치로서 가처분의 유지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가처분의 잠정성과 부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구제절차로서 권리가 실행되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2)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정정보도를 명하는 재판이 결정인 경우에는 심문절차만을 거친 경우이므로 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다시금 변론을 거쳐 정정보도청구권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해 줄 것을 바라는 피신청인(언론사)측의 불복이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입법론적으로 보아서는 정정보도결정에 대하여는 항소기간과 유사하게 이의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결정의 집행력에는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 제 473 조, 제 474 조에 의한 집행정지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종전의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결정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정정보도청구가 이유있으면 이미 발령한 원결정을 인가하고,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는 동시에 정정보도청구심판신청을 기각한다. 원결정이 일부만 이유 있거나 이미 명한 정정보도의무가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변경한다.

문제는 위 이의신청으로 재판이 계속중에 이미 원결정에 의해 언론사측의 정정보도의무가 집행된 경우이다. 원결정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되는 때에는 이미 집행된 의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겠지만 판례에 의해서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배상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당해 지면에 상당하는 광고료라고 할 수는 없고 통상의 인쇄 및 제작비 상당이 될 것이다. 광고료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려면 당해 신문이 정정보도문의 보도로 인하여 다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광고료수입이 상실된 사정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위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와 상고가 허용됨은 물론이다.

3) 판결에 대한 항소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경유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통상의 불복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있어서는 전술한 이의신청 후의 심리와

판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판결은 즉시 집행력을 갖게 되고, 항소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소심 심리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면 종전판결을 취소하고, 종전판결에 의한 정정보도의 비용과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참고문헌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편람, 1990.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연구, 1989.
- 언론중재위원회, 1990년도 연차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국내 언론관계판례집 제 1 집, 1990. -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1989.가을, 겨울, 1991.봄
- Hartmann-Rieder, Mediengesetz, Handkornmentare zum österreichen Recht, Band 4, Manz Verlag Wien 1985.
- Löffler /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2. Auflage, C. H.Beck, München 1986.
- Seitz/schmidt /schlner, Der Gegendarstellung-anspruch in Presse, Filnt Funk und Fernseh, Verlag C. H .Beck, München, 1980.
-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dbuch des Äu B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1986.
- 박용상, 한국에서의 언론중재-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81. 창간호.
- 박용상,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3. 여름.
- 박용상, 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1987. 겨울.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일반적 고찰, 언론중재, 1989. 가을.
-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전체, 언론중재, 1991. 여름.
- 이영섭 편집대표, 주식 강제집행법, 사법행정, 1983.
- 이석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상, 하, 일신사, 1981.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하), 1982.
- 법원행정처, 보존소송의 제문제, 재판자료 제 45 집 (상), 제 46 집 (하), 1989.
- 이재흥, '간이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제 2 차 법관세미나 결과보고서(민사재판제도의 개선), 사법정책자료 제 3 집.
- 허 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SA), 법원행정처, 제 2 차 법관세미나 결과보고서(민사재판제도의 개선), 사법 정책자료 제 3 집 유비각 법률학전집
- 小山 昇, 민사조정법(신판)

주

1) 반론권의 행사를 위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1년의 시효 간이 규정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원에 반론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언론사에 직접청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보도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피해자)이 지체없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반론게재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반론권은 소멸된다. 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사실상 그 보도를 인지한 시점이다. 이 경우 지체없음의 시간적 한계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2주간의 기간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1980. 8. 20.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반론권 행사의 기간제한으로서 일률적인 2주간의 제한은 반론권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기간이라고 판결한 이래 학설과 판례는 보도에 관하여 일한 독자의 기억력이 살아있는 기간을 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응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속하는 시한을 그 행사의 제한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 기간제한은 언론사에 직접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이고, 언론사가 그 게재보도를 거부한 경우 그 후 법원에의 출소기간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명문상 아무런 기간제한이 설정되고 있지 않다. 고령지만 판례와 학설은 현실적 필요성 철칙에 따라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청구하여 반론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받음이 없이 상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보도의 독자들에게 대응보도를 알게 할 현실적 필요성이 소멸되면 그 권리도 실권이 되고, 그 후에 법원에 반론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된다고 하고 있다. 어쨌든 원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Aktualitätsbezug)은 소멸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2) 서울 민사지방법원 1982. 11. 4. 선고 82카 2754 판결은 「결국 위 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그 게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동지 춘천지방법원 1983. 2. 9. 선고 832카 768 판결).

3) 독일에서는 반론게재청구권이 고도의 개인적 성격을 갖는 것을 이유로 게재를 바라는 반론문(정정보도문)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을 의미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임의 대리인은 제외된다.

4) WenB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Handbuch des Äu Berungsrechts, 3.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KG, Köln, 1986, 5. 468.

5) Seitz/Schmidt /Schöner, Der Gegendarstellung–anspruch in Presse, FilmL Funk und Fernseh, Verlag C.H.Bech, München, 1980, 5.55.

6) Seitz/Schmidt /Schöner, a,a,O.S.55.

7) Wenzel, a,a,O.S.450.

8) 예컨대 「회원들의 '사적인 소유물은 몰수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주장은 틀린 것이다. 바른 것은 회원의 사적인 소유물은 몰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고 반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Wenzel, a, a, O. S. 451.

9) Wenzel, a, a, O. S. 449.

10) Wenzel, a, a, O. S. 436, Seitz /Schmidt /Schöner, aaO. S. 48 바이에른주의 언론법에서는 이 관련성이 표시되지 않은 반론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거부될 수 있다.

11) Wenzel, a, a, O. S. 436.

12) Wenzel, a, a, O. S. 437.

13) Wenzel, a, a, O. S. 438.

14) Seitz /Schmidt / Schöner, a, a, O. S.S2.

15) Seitz /Schmidt /Schöner, a, a, O. S. 167, Wenzel, a, a, O. S. 440.

16) OLG 함부르크 O. 20. 7. 72 Archiv für Presserecht 73, 387.

17) Wenzel, a. a. O. S. 441

18) Wenzel, a. a. O. S. 443.

19) Seitz /Schmidt /Schöner, a, a, O. S. 56.

20) Seitz /schmidt /Schöner, a, a, O.S. 58.

21) Seitz/Schmidt/Schöner, a, a, O. S. 591. 이 경우 제출되는 문서는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해 의문이 없고, 그 내용도 일의적인 단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22) Seitz /Schmidt /Schnner, a, a, O. S. 60.

23) Seitz /Schmidt /Schöner, a, a, O. S. 63.

24) Wenzel, a, a, O. S. 464.

25)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내용 사이에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주석을 한다면……내용이 밝혀졌다」는 주석을 붙인 경우 함부르크지방법원은 위 의무에 위반된 것이어서 재차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바 있다. Wenzel, a, a, O. S. 467

26) Wenzel, a, a, O. S. 468.

27) 박용상, 언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3년 여름호 45면 이하 참조.

28) 1987년 정간물법이 중재위원회의 사실조사권과 항사자의 출석의무 및 불출석시의 합의간주제도를 신설한 것이 그 주요 개선점이지만, ① 강제조정권을 여전히 인정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중재신청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일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은 점이라든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③ 심의 및 시정권고권에 대하여 명료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에 있어서는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29) 이들과 같은 법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제도의 존재의의는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갖지 못하는 이 점을 취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의 해결, 당사자 본인 의사의 존중과 변호사 개입의 배제, 비공개적인 사적인 절차, 비형식적이고 자유간편한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비법률적 전문적 규범의 적용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있고, 일정한 유형의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30) 현행법상 인정되는 중재제도로는 일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해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중재계약)가 있는 경우에 중재법(1966. 3. 16 법률 제 1767 호)에

의해 행해지는 중재가 있다 중재계약에 약정된 바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의 다수결에 의한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의 출소가 금지되며(동법 제 2 조),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중재판결소의 소가 허용될 뿐이다(동법 제 13 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위 중재법에 의한 국내 및 국제간의 상사중재절차를 정하는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놓고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중재절차는 노사 쌍방이 신청한 때나 중재신청할 수 있음을 약정한 단체협약에 기해 신청을 한 때(이른바 임의중재) 또는 공익사업에서 행정관청의 요구나 노동위원회의 회부결정이 있을 때(이른바 강제중재)에 개시되며(노동쟁의조정법 제 30 조), 노동위원회 내에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임의중재이거나 강제중재이거나를 막론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동법 제 37 조 내지 39 조).

31) 노동위원회법 제 10 조, 가사심판법 제 4 조, 차지차가 조정법 제 20 조 및 제 22 조, 소비자보호법 제 35 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8 조 등 참조.

32) 가치분절차라 함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본안 소송절차가 있기 전에 그에 부수하는 절차인데(부수성),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때에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하는 절차이므로(잠정성) 그 심리는 계쟁물에 관한 현상의 변경을 막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됨이 원칙이며 (밀행성),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어(긴급성)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그 입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명의 방법이 행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보전 필요성과 보전조치의 다양성 때문에 보전소송절차의 심리 및 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넓은 범위의 자유재량을 갖는다(자유재량성). 법원이 가치분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권리의 처분을 금하거나 현상을 동결시키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입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이라 함은 채권자가 원하는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후에 판결을 얻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 697 조).

33) 서울민사지방법원 신청부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이해의 자세 여부, 언론사의 규모,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행할 때까지 매일 500 만원 내지 1,000 만원의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지고 있다.

- 서울대 법대, 서독 프라이브르크대, 서울대 대학원(법학박사)
- 저술: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과 프라이버시」, 「방송법제론」 외
- 현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